



“1 분만 주차할게요...” 60 초는 긴 시간입니다!

장애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고 식별용 플래카드/번호판이 있지 않은 한 절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의입니다 - - 또한 법입니다.

중요: 귀하에게 플래카드나 번호판이 있더라도 장애인 주차 공간 옆에 있는 빗금 표시 접근로에는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이 접근로는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타고 내리도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본 출판물은 자료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주차 접근성에 관한 법률이나 법령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State of New Jersey
Mikie Sherrill, Governor
Dr. Dale G. Caldwell,
Lt. Governor(부 주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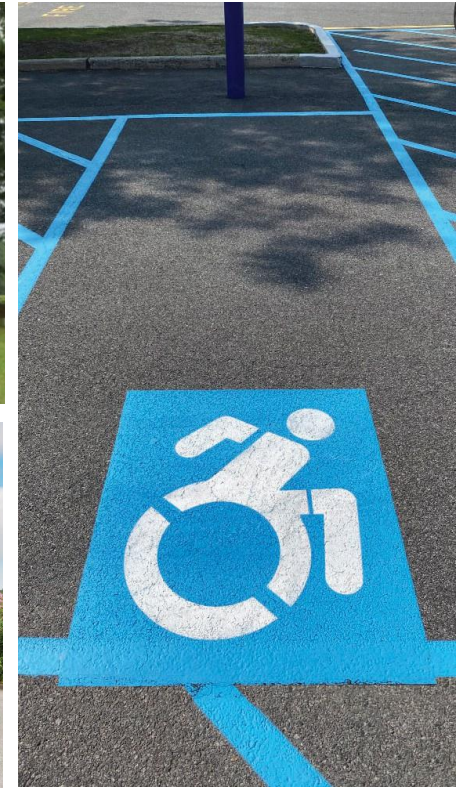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보건복지부)
Dr. Stephen Cha,
Commissioner(위원장)



뉴저지

주차 접근성 가이드



State of New Jersey(뉴저지주)
Mikie Sherrill, Governor(주지사)
Dr. Dale G. Caldwell,
Lt. Governor(부 주지사)



Division of Disability Services(장애인복지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보건복지부)
Dr. Stephen Cha,
Commissioner(위원장)

편집자 노트: 주 법률은 “장애인” 주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 가이드에서는 사람을 중시하는 언어를 반영하여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접근성”으로 대체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상품과 서비스에 안전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차 접근성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공공 및 민간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을 얻도록 합니다.

뉴저지주 주차 접근성 요건은 뉴저지주 법령과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기준을 조합한 것입니다.

뉴저지주 주차 접근성 요점

- 년에 한 번씩 “장애인 신분증”(그림 1 참조) 발급이나 갱신 신청을 할 때마다 정식 의료인이 장애의 존재를 증명하여 발급한 진단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N.J.S.A.39:4-205)
- 장애를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 신분증을 소지한 개인”이 차량에 탑승하거나 운전자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이 카드는 장애인의 개인용이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 즉시 신분증, 플래카드, 번호판이 취소될 수 있으며 \$25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N.J.S.A.39:4-205)
- 상시 플래카드(그림 2 참조)는 3 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하며 무효화되는 날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N.J.S.A.39:4-206)
- 임시 플래카드(그림 3 참조)는 단기 이동 능력 손상 시 허가됩니다. 정식 의료인의 서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임시 플래카드는 6 개월 동안 유효하며 발급 기관의 임의 결정에 따라 갱신할 수 있고 각 지자체의 경찰서장이 발급합니다. (N.J.S.A.39:4-206)

자세한 정보

NEW JERSEY HUMAN SERVICES



New Jersey Human Services Division of Disability Services

PO Box 705 Trenton, NJ 08625-0705

1-888-285-3036

www.nj.gov/humanservices/dds



New Jersey Motor Vehicle Commission

Special Plate Unit

225 East State Street

PO Box 15

Trenton, NJ 08666-0015

609-633-8857

www.nj.gov/mvc/vehicles/disability.htm

ADA 정보 라인

1-800 514-0301 (Voice)

1-800-514-0383 (TTY)

www.ADA.gov

특정 상황:

- 주차 차량이 장애 제대군인 또는 **Purple Heart** 수령인의 소유입니다.
- 장애 제대군인이나 **Purple Heart** 수령인이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입니다.
- 해당 차량이 MVC 에서 발급한 고유 플래카드를 표시합니다.

장애 제대군인 또는 **Purple Heart** 수령인 플래카드 소지자는 자격이 있는 경우 장애인(PWAD) 플래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고유 플래카드는 장애인 플래카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Q: 장애인 번호판이나 상시 플래카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신청 및 지침 체크리스트는 자동차 위원회(Motor Vehicle Commission) 웹사이트 www.state.nj.us/mvc/vehicles/disability.htm, 가까운 자동차 위원회 시설 방문, 자동차 위원회 전화 609-633-8857, 우편 발송 요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는 번호판과 상시 플래카드 최초 신청, 갱신 및 교체 요청에 이용됩니다. “장애인 신분증을 소지한 개인”은 최초 신청 후 발급을 받게 되며 번호판 및/또는 상시 플래카드와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자격이 인정된 신청인은 장애인 개인 또는 자격이 인정된 개인에게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운전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휠체어 기호가 있는 번호판 한 세트를 받습니다.

- 특별 차량 표시 없이 접근성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250 의 최초 벌금과 이후 \$250 이상의 벌금 및 90 일 이하의 커뮤니티 봉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N.J.S.A.39:4-197(3)c)
- 지자체는 주거지, 학교, 병원, 공공건물, 쇼핑 및 상업 지구 앞에 주차 접근성 공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J.S.A.39:4-197.5)
- 지자체는 주차 접근성 공간이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장애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앞에 주차 접근성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J.S.A.39:4-197.6)
- 법률 단속관은 공공 및 민간 부지에서 주차장 접근성 법률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N.J.S.A.39:4-138.(o))
- 지자체는 쇼핑 센터와 물에 집중하는 주차 단속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J.S.A.39:4-197.9)
- 자격이 인정된 장애인은 주차 접근성 공간이나 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 제거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N.J.S.A.39:4-207.7)
- 주차 공간, 커브 또는 기타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개선 시설 접근로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공공 주차 공간의 소유자나 통제자는 눈 및/또는 얼음을 발생시키는 기상 상황이 끝난 후 24 시간 이내에 이 구역들에서 눈이나 얼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500 에서 \$1,000 사이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N.J.S.A.39:4-207.9)
- 한 구역에서 최대 24 시간 이내의 초과 주차를 할 수 있는 유효한 “장애인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 해당하는 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N.J.S.A.39:4-207)

(주의: 미터기 주차는 N.J.S.A. 39:4-197 에서 지자체에 위임합니다. 24 시간 제한은 N.J.S.A. 39:4-207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DA 표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주차 공간 접근성은 국제 접근성 기호를 포함한 표지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접근로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접근로는 접근성을 갖춘 주차 공간의 각 접근 통로에 인접해야 합니다. 접근로는 각 접근 통로를 접근성 주차장 입구로 연결해야 합니다.
- 접근성 주차 공간은 접근성 입구까지 최단 경로에 위치해야 합니다.
- 접근성 주차 공간과 필수 접근로는 장애인이 접근성 주차장 입구에 가기 위해 차선을 건너거나 주차된 차량 뒤로 지나갈 필요가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차선을 건너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지방 소방 접근성 규정에 따라 건물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없다면, 입구로 연결된 통로에 차량 이동로에 직각으로 표시된 교차로를 포함해야 합니다.
- 여섯 개의 접근성 주차 공간 중 하나는 반드시 밴이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장애인 신분증 및 플래카드

그림 1: 장애인 신분증



미국 또는 캐나다의 자치구 또는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은 뉴저지에서 장애인 주차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39:4-207.5)

Q: 상점 소유자 및 기타 사업체는 주차 접근성 공간에 불법 주차한 다른 손님, 주차 공간 옆 빗금 공간에 주차하는 손님에 대한 불만을 자주 제기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주차 접근성이 표시된 공간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는 담당 법를 단속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지역 내에서 경찰이 이 위반 행위를 담당한다면 가급적 빨리 경찰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 보안업체 직원이 귀하의 주차 구역을 순찰한다면 이들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휠체어 기호가 표시된 면허판/플래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주차 미터기가 적용되는 주차장 이용 시 요금을 내야 할까요?

A: 예. 미터기가 적용되는 공간에서 주차를 할 경우, 장애 플래카드/면허판을 가진 운전자는 미터기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 차량이 미터기에 할당된 최대 시간을 초과하여 공간을 점유한 경우, 운전자는 최대 허용된 금액을 미터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은 다시 돌아와서 미터기를 충전할 필요 없이 최대 24 시간 동안 공간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24 시간이 지나면 차량이 자리를 비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차 미터기는 N.J.S.A. 39:4-197 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되었습니다. 24 시간 제한은 N.J.S.A. 39:4-207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장애 제대군인 플래카드와 Purple Heart 플래카드는 장애인 플래카드와 동등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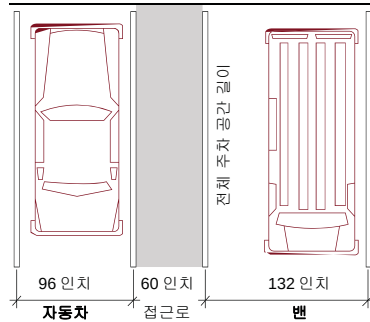
A: 아니요. 장애 제대군인 및 Purple Heart 플래카드는 소지자에게 접근성 주차 공간에 주차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뉴저지주 법률 (N.J.S.A. 39:4-207.10) 은(는) 장애 제대군인 및 Purple Heart 수령인에게 특정 상황에서 최대 24 시간 동안 지자체 주차 미터기 요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이는 밴 사용에 더 적합한 공간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접근성 차량 및 밴 공간을 위한 접근로는 너비가 5 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근로는 접근 통로와 가까이 있어야 하며 통로에 주차하지 않도록 표시를 해야 하고 길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 공간 전체 길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두 개의 주차 공간이 한 접근로를 공유해야 합니다.

Q: 접근성 주차 공간은 주차장 앞에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한다면 비 접근성 주차 공간과 같은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까?

A: 아니요. 접근성 주차 공간은 너비가 8 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근성 밴 주차 공간은 너비가 11 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근성 차량 및 밴 주차 공간 모두 접근로는 5 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본 요건이 적용되기 전에 주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 지정된 공간이 없는 경우, 이제 접근성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하나요?

A: 예. ADA는 민간 법인이 장애물을 없애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업 소유주들이 공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더라도 즉시 실현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뉴저지주 외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나의 휠체어 기호 번호판/플래카드는 유효합니까?

A: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방문하고자 하시는 주에 확인해주시요. 일부 주에서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표준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주 플래카드/번호판은 자체적으로 접근성 주차 허가를 운영하는 뉴욕시 도로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다른 주, 지역, 미국령, 캐나다에서 발급한 특별 번호판, 플래카드, 장애인에게 발급된 주차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뉴저지주 주차 접근성을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림 2: 영구 장애인
플래카드 플래카드



그림 3: 임시 장애인
플래카드 플래카드



플래카드나 번호판 소지자는 다음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접근성 주차 공간 옆에 있는 빗금 접근로.
- 동전을 내지 않은 주차 미터기.
- 24 시간 기간이 초과된 주차 미터기.
- 교차로, 횡단보도, “주차 금지”가 표시된 구역, 정지 표지판으로부터 50 피트 이내 또는 소화전으로부터 10 피트 이내 등 기타 구역.

중요: 제한 주차 플래카드와 번호판은 자격이 인정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플래카드나 번호판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 위원회나 지역 발급 기관이 플래카드/번호판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갱신을 거부하고 \$25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또는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내 또는 야외에서 공공 주차를 제공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주차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 권리를 포함한 자동차 법 집행은 지역의 사안입니다.

불법 주차 불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주, 카운티 또는 지자체 단속관에게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딱지 발급과 차량 견인을 요청하십시오.
- 쇼핑 센터 관리자 또는 사업체 소유자에게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지역 당국에 알리도록 요청하십시오
- 지자체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성 주차 공간은 얼마나 필요하니까?

A: 필요한 접근성 주차 공간 수는 주차장이나 차고지의 총 주차 공간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접근성 설계에 대한 ADA 표준에 따라 새로운 주차 공간 건축 또는 기존에 건축된 주차 공간의 개조 시 모든 주차장과 여섯 개의 접근성 주차 공간마다 한 개 이상의 접근성 공간은 밴 접근성이어야 하며 크기는 11 피트 이상이어야 하고 접근로는 5 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주차 공간 수	필요한 접근성 공간 수	2012 년 3 월 15 일 전에 건축 또는 개조된 경우 필요한 접근성 밴 공간 수	2012 년 3 월 15 일 이후에 건축 또는 개조된 경우 필요한 접근성 밴 공간 수
	각 부지 당 1 개 이상	1:8	1:6
1-25	1	1	1
26-50	2	1	1
51-75	3	1	1
79-100	4	1	1
101-150	5	1	1
151-200	6	1	1
201-300	7	1	2
301-400	8	1	2
401-500	9	2	2
51-1,000	총 2%	8 개 마다 1 개	6 개 마다 1 개
1,000 개 이상	20 + 1, 1,000 개 초과 시 100 개 마다	8 개 마다 1 개	6 개 마다 1 개

Q: 접근성 주차 공간과 접근로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나요?

A: 주차 공간과 접근로는 다른 공간과 대비되는 색상(주로 파란색)을 넣어 도색해야 합니다. 접근성 주차 공간마다 국제 접근성 기호를 갖춘 표지판과 처벌 표지판을 제공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5 에서 7 피트 높이에 상시 설치해야 합니다. 밴 주차 공간을 표시하는 표지판은 “밴 접근 가능” 지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밴 접근성” 지정 요건의 목적은 밴 이용에 적합한 공간을 찾기 위한 정보의 제공이지 제한이 아닙니다.